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산업안전보건 국가 프로파일

서문

2003년 ILO가 채택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글로벌 신전략”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발을 중요한 축으로 언급하고 있다.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ILO 회원국으로써 산업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현재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오스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개발의 첫 단계로 산업안전보건 실태에 관한 정보와 가용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활동들을 정리한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파일을 작성했다.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본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파일 작성에 도움을 준 분들은 다음과 같다:

- Mr. Sisouvanh Tandavong, 노동사회복지부 노동국 국장
- Mr. Sounchanh Phommachack, 노동국 부국장
- Mr. Nikone Vongsavath, 노동관리과 과장
- Mr. Somlith Sayaphol, 농업부 농업과학청
- Mr. Vang Kheuapphaphone, 사회보장기구
- Dr. Phitthanousone, 보건부
- Mr. Phetrassdorn, 산업부
- Mr. Khampheaw, 과학기술환경청
- Mr. Thongvanh Phetthavyseng, 통신교통우편건설부 교통과 과장
- Mr. Taypasavanh Yengthong, 보건부 보건질병예방국 보건환경과 과장
- Mr. Khampheng Souvannbouathong, 라오스 노조연맹 노동보호과 과장
- Ms. Sengdavone Bangonsengdeth, 라오스 상공회의소 사용자협회 협회장
- Mr. Leuthvisay Keola, 라오스 상공회의소 디자인 센터 센터장
- Ms. Niphananh Keola, 라오스 상공회의소 디자인 센터
- Mr. Tsuyoshi Kawakami, ILO 동아시아 사무국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본 프로파일이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산업안전보건의 실태를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산업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한 실제 정책 활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05년 10월

노동사회부
노동국 국장
Mr. Sisouvanh Tandavong

목차	페이지
1.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04
1.1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백서,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	04
1.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가 삼자 협의/자문 기구	05
2. 산업안전보건 법률 체계	05
2.1 노동사회보장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05
2.2 노동 감독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법률 및 규칙	06
2.3 산업사고 및 상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규칙	06
2.4 업무상 사고 및 상해 목록	09
2.5 업무상 사고 또는 상해 기록 및 신고 의무	09
2.6 타부처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노동, 산업, 보건, 농업, 환경, 교통 등)	09
3.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12
3.1 대상 지역	12
3.2 분야 별, 지역 별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수	12
3.3 감독관의 역할	12
3.4 노조 감독관	12
3.5 산업안전보건 훈련과 관련된 감독관의 역할	13
3.6 산업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한 감독관의 자문	13
3.7 다른 부처 또는 단체와의 합동 산업안전보건 감독	13
3.8 산업안전보건 감독 도구	13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부처 및 기관	13
4.1 노동사회보장부의 조직 구조, 산업안전 관련 부서의 역할	13
4.2 주 및 군 단위 산업안전보건 부서의 조직 구조	14
4.3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및 실험 기관	14
4.4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보험/보상 제도	14
5. 관계 정부 기관,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사이의 협력 및 협조	15
5.1 중앙/주 정부 단위 기관/부처 간 협력	15
5.2 국가, 주, 기업체 단위의 사용자/근로자 단체 간 협력	15
6.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15
6.1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설된 훈련 과정의 수	15
6.2 사용자/근로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 훈련	15
6.3 산업안전보건 훈련 기관	16
7. 국가 단위 산업안전부문 인적 자원 관리	16
8. 산업안전보건 통계 및 정보	16

8.1 산업 분야 별 사업체 및 근로자 수, 기타 관련 사회-경제적 통계	16
8.2 지난 5년간 연평균 산업재해 사망자 수	19
8.3 신고 된 업무상 사고 건수	19
8.4 산업재해 보상금이 지급된 업무상 사고 건수	19
8.5 보상 대상 사고 및 상해 목록	19
9. 국가 산업안전보건 캠페인	19
10. 기업의 자발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19
11. 국제 협력 활동	20
11.1 국제기구와의 산업안전보건 협력 활동	20
11.2 양자 프로젝트/협약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 해외 협력 활동	20
12. 산업 부문 별 특별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20
12.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활동	20
12.2 건설 부문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활동	20
12.3 농업 부문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활동	20
12.4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특별 프로그램	21
13. 산업안전보건 조사 활동	21
14.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선 및 홍보를 위한 향후 과제 및 근로자 지원 활동	21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산업안전보건 국가 프로파일

1.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1.1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백서,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법률은 이제 막 정립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국가 사회경제개발 계획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경제개발 계획 발표 및 시행에 관한 총리령 제 157호 (2004/10/06)와 2004-2005 회계연도 국가 예산서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15조: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모든 경제 부문에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 임금에 대한 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실무 계획과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한다. 라오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해외에서 일하는 라오스 근로자를 위한 정책적 솔루션을 개발한다.

성장 및 빈곤 퇴치 전략, 국가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는 HIV/AIDS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장: 국가 빈곤 퇴치 프로그램(NPEP) 운용 기본틀

국가 빈곤 수준을 감안하여 수립된 국가 빈곤 퇴치 프로그램 중기 운영 기본틀은 크게 4개 핵심 부문과 여러 지원 부문,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우선 추진 과제, 빈곤 퇴치를 위한 구체적인 국가 정책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문 별로 국가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경제적, 사회적 통합 촉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주요 부문/지원 부문 활동은 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주요 부문은 농업/임업, 교육, 보건, 인프라(특히 지방 도로)이다. 지원 부문(성장 잠재력이 있는 부문)은 에너지, 지방 전기 공급, 농업/임업, 관광, 광산, 건설 자재 산업 등과 같은 신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부문의 발전과 빈곤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무역 활성화와 시장 연계성 강화이다.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우선 추진 과제로는 환경, 성별, 정보, 문화, 인구, 사회 보장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중요한 것은 부문 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라오스는 3개의 빈곤 관련 국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국가 약물 통제 프로그램, UXO 기록 프로그램, 국가 HIV/AIDS 예방 계획

- * 국내 투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0/NA호 (2004/10/22), 국회 의장
- * 해외 투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0/NA호 (2004/10/22), 국회 의장

1장 총칙, 3조: 국내외 투자 활성화.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은 국가 안보를 저해하거나, 단기적, 장기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건강 또는 국가의 전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

국내투자법 II장 7조는 해외투자법 III장 13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국내 투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0/NA호 (2004/10/22), 국회 의장

II장: 국내 투자자의 권리, 혜택, 의무

7조: 국내 투자자의 의무:

* 해외 투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10/NA호 (2004/10/22), 국회 의장

국내/해외 투자자의 의무:

- 자신의 기업의 근로자의 복지, 보건 의료,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사업 활동이 공중 보건, 국가 안보, 사회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률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보험 및 사회 보장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 및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 유지해야 한다.

1.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가 삼자 협의/자문 기구

라오스 최초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가 삼자 협의회는 2000년 5월에 열렸다. 이 회의에서 협의회는 라오스가 산업안전보건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개선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와 함께 열린 워크숍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3대 우선 추진 활동 분야로 소기업, 건설, 농업이 지목되었다. 2차 삼자 협의회는 2004년 7월에 열렸다. 이 회의와 함께 개최된 워크숍을 통해 “국가 산업안전보건 계획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ILO 회원국인 라오스는 ILO의 글로벌 신전략과 국가 산업안전보건 활동 계획 수립 권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활동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노동국에서도 워크숍을 2회 개최했다. 보건부, 통신교통우편건설부, 산업부, 농림부, 과학기술청, 라오스 노조 연맹(LFTU),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 등과 같은 관계부처 및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 관련 활동,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 산업안전보건 법률 체계

2.1 노동사회보장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노동법, 노동에 관한 법률 제 002/NA호를 반포하는 대통령령 제 24/PR호(1994/04/21)

X장: 노동 보호

49조: 안전 보장 및 근로 조건:

사용자는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사업장, 기계, 자재, 각 생산 공정, 화학물질의 사용이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 통제할 책임을 진다.

사용자는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 협의하여 노동 및 건강 보호 관련 근로 규칙, 기계 사용, 안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진다. 근로 규칙은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관련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 및 위생 보장을 위해 필요한 대책:

- 전기/자연 조명 시설 설치를 통한 충분한 조명 확보, 과도한 소음 방지, 건강에 유해한 분진 및 악취를 내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환기 시설
- 음용수, 세척수, 샤워실,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제공

- 유해 물질을 누출 위험 없이 안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시설
- 근로자가 투입된 공정의 위험 요소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개인보호장비 및 보호의 지급
- 위험한 기계 또는 그 밖에 위험한 구역 주변에 보호 장치 또는 펜스 설치, 화재경보기, 감전 방지 장치 등과 같은 필요한 대책 마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 자신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훈련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체의 모든 대책은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자기 자신과 다른 동료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용자의 조치를 성실하고 철저하게 따라야 하며, 사용자에게 협조해야 한다. 사용자는 마약류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총리령 제 98/PM호 (1995/12/14)

III장: 사용자 대표의 임명과 그 의무

13조: 사용자 대표는 사용자들이 노동력의 관리 및 사용, 근로 조건, 산업안전보건, 휴식 시간, 노동 비용, 훈련, 기술 수준 향상,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협약, 규칙, 법률, 근로 계약, 기타 사용자의 책임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촉구할 의무를 진다.

IV장: 자체 근로 규칙, 사업장 및 노동 계약

14장: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자체 근로 규칙을 제정해야 하고 제정된 규칙을 모든 근로자에게 전파 및 숙지시키고 시행해야 한다.

근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근로 시간
- 휴식 시간, 점심 시간
- 주휴일, 공휴일
- 개인보호장비 및 안전 장치의 사용
- 사업체 내부로 물건 반입, 외부로 반출
- 초과근무, 초과근무 수당
- 질병,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
- 이의 제기, 노동 문제 해결 방법
- 자체 근로 규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

ILO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들은 노동사회보장부의 노동 관련 법률 및 규칙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

2.2 노동 감독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한 법률 및 규칙.

“노동 감독”에 관한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의 법안은 2004년 9월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2.3 산업사고 및 상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규칙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노동법, 노동에 관한 법률 제 002/NA호를 반포하는 대통령령 제 24/PR호(1994/04/21)

XI장: 업무상 재해

51조: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상해, 근로 능력상실, 장애 또는 그로 인한 사망을 초래한 사고 중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사업장에서 또는 사용자/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관리를 책임진 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한 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실, 식당, 기타 사업체 내에서 발생한 사고

모든 형태의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노동 당국은 보건 당국 및 노조와 협력하여 업무상 질병의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지시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53조: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 상 질병 피해 근로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상해야 한다:

- 업무상 재해 피해자는 의사가 처방한 치료 및 재활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기본급 또는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치료 및 재활 기관이 6개월을 넘을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기본급의 50%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18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업무상 재해의 결과로 피해 근로자에게 장애가 발생했거나 신체 기관을 절단한 경우, 업무 상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관련 현행 규칙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피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가 동법 48조에 따라 보상기금 또는 사회보장기금에 부담금을 납부했거나,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상기 모든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해당 기금 또는 보험사에 있다.

* 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회 보장 제도에 관한 총리령 제 207/PM호 (1999/12/23), 사회보장기구, 노동사회복지부(2000년 7월 1일 발효)

8장: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피해자 수당

50조: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 공간, 식당, 그 밖에 사업체의 책임 하에 있는 공간,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를 관리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치한 장소에서 근무 중 근로자의 상해, 장애, 근로 능력 상실 또는 사망이 초래된 경우를 의미한다.

51조: 업무상 질병

업무로 인해 발생하여 근로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영향을 미친 모든 종류의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된다.

업무상 질병 목록은 ILO 협약에 부합되어야 한다.

업무상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인 경우에도 의료위원회에 의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52조:

보험에 가입된 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의 피해를 받은 경우, 부담금 납부 기간과 무관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이 해당

보험 가입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53조: 사회보장제도 비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총리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의 피해를 받은 경우, 총리령에 따른 다음과 같은 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 치료 및 회복 수당
2. 일시적 근로 능력 상실 수당
3. 돌봄 수당
4. 영구적 근로 능력 상실 수당
5. 장례 수당
6. 유가족 수당

55조: 치료: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 피해 근로자는 총리령 4장에 따른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외부 자금원으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해당 외부 자금원을 통해 부담한 비용과 실제 치료비 사이의 차액을 사회보장기구가 부담한다.

56조: 일시적 근로 능력 상실:

피보험자는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병가 기간 중 근무 복귀 시 7지 일시적 근로 능력 상실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노동법 시행을 위한 총리령 제 98/PM(1995/12/14)

VIII장: 업무상 사고의 처리:

30조: 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즉시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고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사고 관련자 또는 목격자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31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유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 사망자의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전 월급의 6배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사망자의 근속 기간이 3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전 월급의 8배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 사망자의 근속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전 월급의 15배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생전 월급의 3배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사용자와 사망한 근로자 모두 사회보장기금을 전부 납부해온 경우, 장례 비용 및 유가족 보상비는 사회보장기금에서 책임진다.

* 제조업법, 제조업법에 대한 의회 의결 제 01-99/NA(1999/04/03), 제조업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제 10/PDR호(1999/04/26)

VI장: 분쟁 해결, 관련 법령을 준수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혜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한 제재

55조: 배상: 제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근로자, 공장, 공장 외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그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56조:

제조업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1. 공장 및 제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당국의 제품 샘플 또는 문서 사본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관할 당국의 유해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공장 건물 또는 기계의 변경 또는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7조:

사업 허가 및 관련 서류 갱신 의무 위반, 공장 안전 조치 미실시,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망 또는 건강 문제 발생 등과 같이 제조업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기업은 동법에 따라 처벌된다.

2.4 업무상 사고 및 상해 목록, 보상 대상 사고 및 상해. 사회보장 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업무상 사고 및 부담금 납부자의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5 업무상 사고 또는 상해 기록 및 신고 의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부상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기고 사회보장기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고를 기록하고 사회보장기구에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형 사고 또는 심각한 사고인 경우 경찰에도 신고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6 타부처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노동, 산업, 보건, 농업, 환경, 교통 등)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노동법, 노동에 관한 법률 제 002/NA호를 반포하는 대통령령 제 24/PR호(1994/04/21)

X장: 노동 보호

49조: 안전한 근로 조건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2.1절 참고)

* 위생, 질병 예방,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보건부, 법무부 법률홍보및배포국과 협력), 위생, 질병 예방, 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 제 04/NA호(2001/04/10)를 반포하는 대통령령 제 49호(2001/04/25)

18조: 사업장 위생

사업장 위생은 공업, 농업, 수공업 등의 부문에서 근로자의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조건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장 위생 관리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건강 및 생명에 유해할 수 있는 질병,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사용자는 관련 규칙에 따른 조명, 환기, 온도, 상대 습도, 소음, 악취, 분진 관리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위생을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특히 위험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법에 따른 건강 검진 및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0조: 건설 및 수선 현장 위생:

건설 및 수선 현장 위생이란 도로, 건물 건설, 주택 수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위생 관리 조치를 의미한다. 이 조치는 근로자, 주변 지역사회, 해당 지점을 오가는 사람들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는 위생 규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건설 및 수선 현장의 안전, 위생, 편의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표지판 및 펜스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덮개 또는 그물을 사용해서 현장을 덮을 수 있어야 하며, 건축 자재에서 분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 광산법, 광산법 제 04/97NA(1997/04/12)를 반포하는 대통령령 제 36/PDR호 (1997/05/31)

42조: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책임

6장: 사용자는 충분한 훈련과 기술 자격을 가진 자만이 광산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광산 근로자의 복지, 보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45조: 기술 및 공법 기준:

모든 광산 작업에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고 산업부 및 관련 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며 안전 및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기술 및 공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 제조업법, 제조업법에 대한 의회 의결 제 01-99/NA(1999/04/03), 제조업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 제 10/PDR호(1999/04/26)

II장: 공업 및 수공업 부문 제조업

그룹 3: 공장 가동 조건

14조: 공장 가동 조건

가동 허가를 받은 공장은 제품 품질 기준, 안전, 보건, 공장 환경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룹 V: 환경 보호

20조: 환경 보호 대책

공장의 건설 및 가동은 소음, 빛, 악취, 독성 물질, 분진, 연기, 진동, 온도, 상대 습도, 교통 등의 측면에서 지역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독성 물질을 운송 또는 사용할 때는 환경 보호 규칙 및 산업부의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IV장: 제조업자의 권리 및 의무

42조: 제조업자의 의무

6. 기술 훈련 제공, 임금, 복지, 보건, 안전을 포함한 근로자 보호

* 농업에 관한 법률 제 01/98/NA호(1998/10/10), 국회 의장

I장 총칙, 6조: 환경 보호

농업 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II장: 농업 기업, 10조: 농업 기업의 권리 및 의무: 의무:

- 농작물 생산 중 다른 사람들, 환경, 천연 자원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농업 감독 기관의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V장: 환경 보호:

65, 66, 67조에서 환경 보호, 인적 자원 보호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65조: 사람, 동물, 토양, 물, 숲, 공기를 포함한 사회/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66조: 살충제 사용 및 보관 시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7조: 가축 관련 환경 보호 대책:

가축은 주택 또는 상수원 근처가 아닌 적절한 장소에서 사육해야 하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기적인 위생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살충제 사용에 관한 규칙 제 0886/AF호(2000/03/10)

II장: 살충제: 살충제의 종류, 독성 등급

IV장: 살충제의 유통 및 사용:

26조: 살충제 규격 정보

4.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표지판 설치

* 비엔티안 수도 지역 목재 가공 및 임산물 관리 허가 취득에 관한 고시 제 200호(2005/02/11), 비엔티안 농림업과 과장

1. 비엔티안 도 내의 임업 업체는 규모 확장 시 지역 내 공장 수 제한 등과 같은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관할 당국에 협조해야 하며, 지역사회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보호 구역 근처에는 공장을 건설할 수 없다.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 및 근로자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기계를 설치/사용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3.1 대상 지역

“노동 감독 협약” 초안에 따라 모든 산업 분야/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대상이 된다.

3.2 분야 별, 지역 별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수

전국에 걸쳐 주 및 군 단위 노동 부서에 188명의 노동 감독관이 근무 중이다. 지역 별 노동 감독관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주/군 노동사회감독과	감독관 수	주 노동 감독과	군 노동 감독 사무소
1	노동관리과	4		
2	세콩	5	1	4
3	앗다프	5	1	4
4	사야불리	20	5	15
5	비엔티안	12	2	10
6	사라반	9	1	8
7	사반나켓	14	1	13
8	참파삭	13	3	10
9	캄무안	12	2	10
10	루앙프라방	15	2	13
11	루앙남타	6	1	5
12	우돔싸이	9	2	7
13	후아판	9	1	8
14	풍살리	3	3	0
15	씨양쿠앙	9	2	7
16	비에티엔 도	24	6	18
17	보이캄싸이	7	2	5
18	보케오	9	4	5
19	사이솜분 특별 지구	3	1	2
	합계	188	40	144

3.3 감독관의 역할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노동감독관들은 공장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관리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제조업법은 감독의 종류로 정기 감독, 사전 통지 감독, 긴급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주관하는 노동 감독 활동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건설부(건물 안전 감독 시) 등과 같은 유관 기관과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3.4 노조 감독관

앞서 언급한 노동사회보장부 노동국의 노동감독 활동 외에 라오스 노조연맹에서도 노동 감독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라오스 노조연맹은 노동 감독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협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연맹은 주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업무 시간 후) ILO에서 개발한 WISE(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조업법은 산업부, 유관 부처, 지방 정부 등과 같이 공장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장 활동이 다른 공공 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

련되어 있을 경우, 조사 시 해당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해당 기관 대표자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

노동감독관은 공장의 설립과 가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은 주로 건물이 기술 기준에 맞게 건설되었는지 여부, 기계/장비 기준, 제품 기준 준수 여부, 근로 관리, 근로자의 권리 의무 보장,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관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해당 요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3.5 산업안전보건 훈련과 관련된 감독관의 역할

노동국은 ILO와 협력하여 감독관을 위한 훈련 과정을 개발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훈련 교관에 대한 훈련이 시행되었으며, 2005년 2월, 주 단위에서 처음으로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훈련이 시행되었다.

3.6 산업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한 감독관의 자문

감독관은 공장 방문 시 사용자에게 산업안전보건 법률 또는 자연 환기나 자연 조명의 활용법 등과 같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조언하기도 한다.

3.7 다른 부처 또는 단체와의 합동 산업안전보건 감독

주 단위로 합동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에는 라오스 노조연맹, 라오스 상공회의소, 무역 담당 부서, 경찰, 청소년 단체, 여성 노조 등과 같은 주요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3.8 산업안전보건 감독 도구

본 보고서에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안)가 첨부되어 있다.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부처 및 기관

4.1 노동사회보장부의 조직 구조, 산업안전 관련 부서의 역할

노동사회복지부의 장은 장관이며, 두 명의 차관이 장관을 보좌한다. 노동사회복지부는 노동국, 감독국*, 총무국, 사회복지국, 참전/상이군인국, 연금노인국, 사회보장국의 7개국과 1개 장관실로 구성되어 있다.

* 감독국은 노동, 산업안전보건 감독과는 무관하며, 노동사회보장부 조직 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산업안전은 노동국 산하 노동관리과에서 담당한다. 노동관리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래 상술한다.

노동국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부령 제 2405/MoLSW호 (2000/08/28) 노동사회보장부장관

1조: 노동국은 노동사회보장부 산하 부서 중 하나다. 노동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 및 노동사회보장부 조직 구조 및 활동 규칙에 따라 장관을 보좌하여 노동 정책, 규칙, 노동 관리 규칙 개발, 노동 기술 개발, 라오스 국민 고용 촉진 업무 수행

5조: 노동국의 조직 구조

노동국은 3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1. 노동정책기획과; 2. 노동보호과; 3. 기술개발고용촉진과.

노동보호과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노동법, 근로 관리 관련 행정규칙, 노동 정책의 시행
- 노동 감독, 노동 분쟁 해결 규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안 작성
- 노동법, 근로 관리 관련 행정규칙, 노동 정책 시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지침 제공, 후속 조치
- 산업 안전, 근로 규칙, 노사 관계에 대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이해/인식 제고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 활동
- 주요 노조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노동 관련 분쟁 해결
- 라오스 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록 및 관리
- 라오스 내 근로자 관리 관련 문서 검토
- 노동보호과 업무 관련 훈련 과정 개설
- 노동보호과 업무와 관련된 다른 관계 기관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4.2 주 및 군 단위 산업안전보건 부서의 조직 구조

주 및 군 단위에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주 단위 감독관의 수는 3.2절을 참가하라.

4.3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및 실험 기관

과학기술환경청 및 보건부는 실험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엔티안의 의학전문대학은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공기질 측정기를 가지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제공받음).

4.4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보험/보상 제도

사회보장기구는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 근거는 사회보장제도 규칙 반포를 위한 총리령 제 207/PM호(1999/12/23)다. 사회보장 제도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회보장기구 청구과는 업무상 사고 통계를 작성할 책임을 진다. 청구과는 치료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가입 기업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에 관한 모든 기록도 청구과에서 관리한다.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질병으로 확진할 자격을 가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청구과에서도 어떤 사례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라오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사회보장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홍보 프로그램도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훈련 교관에 대한 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예방 및 개선 활동에 관한 훈련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ILO 사회보장 프로젝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5. 관계 정부 기관,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사이의 협력 및 협조

5.1 중앙/주 정부 단위 기관/부처 간 협력

산업안전 관련 전반 또는 특정 부문의 업무를 조정하는 공식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국 산하 노동관리과가 그 업무 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 노동관리과는 ILO와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 문제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유관 기관 및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다.

5.2 국가, 주, 기업체 단위의 사용자/근로자 단체 간 협력

사용자 조직(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디자인 센터”로 대표되는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에서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디자인 센터의 훈련 과정은 수익 활동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가입 기업들인 훈련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훈련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훈련 참가 자체도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근로자 조직(라오스 노조연맹)도 자체적인 산업안전보건 훈련팀을 운영하고 있다. 훈련팀은 자체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HIV/AIDS 프로그램, ILO의 WISE(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6.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6.1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설된 훈련 과정의 수

지난 5년간 개설된 산업안전보건 훈련 과정의 수와 참여자 수는 다음과 같다:

- 상공회의소 디자인 센터에서 20개 산업안전보건 훈련 과정을 개설했으며, 약 480명이 참여했다.
- 라오스 노조연맹에서 20개 과정을 개설했으며, 약 480명이 참여했다.
- 노동국 노동과에서 8개 과정을 개설했으며, 280명이 참여했다.

6.2 사용자/근로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 훈련

디자인 센터가 상공회의소(사용자 단체)의 훈련 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디자인 센터는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디자인 센터의 훈련 교관은 라오스 노조연맹(근로자 단체)의 교관에 대한 훈련도 지원하고 있다. 라오스 노조연맹의 훈련팀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03~04년에 라오스 노조연맹은 14개 기업에 14개 훈련 과정 개설을 지원한 바 있으며, 총 507명(여성 345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6.3 산업안전보건 훈련 기관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훈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기관은 디자인 센터가 유일하다. “디자인 센터”는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관을 보유한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그 밖에도 2000년 8월에 시작된 첫 번째 WISE(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훈련을 통해 20명 이상의 WISE 교관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원 소속 기관 또는 기업으로 복귀하여 소속 기관 또는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수준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실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의 훈련은 주로 협력 기관과 함께 진행된다. 훈련은 대부분 협력 기관에 의해 주도되며 산업부는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7. 국가 단위 산업안전부문 인적 자원 관리

산업안전보건 담당자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실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해외에서 훈련을 받고 귀국한 10명 이상의 산업안전보건 전문가가 있지만, 이들이 전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전문대학에서도 교과 과정의 일부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학생 수는 아직 적은 편이며, 졸업생들은 대부분 일반 의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 관계 기관의 노동 감독 훈련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WISE(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WISCON(중소기업 건설 현장 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훈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단위 감독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 및 군 노동 감독관의 역량과 지식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 통계 및 정보

8.1 산업 분야 별 사업체 및 근로자 수, 기타 관련 사회-경제적 통계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인구는 약 5,600만 명이며, 그중 경제활동인구는 약 3,600만 명이다.

아래 자료는 2003년 기준 산업 분야별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농업: 48%
 공업: 26%
 서비스업: 25%
 수입: 1%

(출처: 국가통계청, 기획협력위원회)

아래 표는 지역, 고용 형태, 산업 분야 별 기업체 및 근로자의 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지역별 기업체 수(2002년)

	주	기업 규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1	비에티엔 도	58	181	1,810
2	퐁살리	0	0	1,565
3	루앙남타	2	11	485
4	우돔싸이	0	12	1,546
5	보케오	0	7	524
6	루앙프라방	0	46	2,290
7	후아판	0	6	427
8	사야불리	1	15	1,351
9	씨앙쿠앙	0	16	1,070
10	비엔티엔(州)	2	79	2,718
11	보이캄싸이	7	34	1,610
12	캄무안	19	26	1,860
13	사반나켓	11	80	2,396
14	사라반	1	16	1,467
15	세콩	0	10	403
16	참파삭	12	55	1,989
17	앗타프	0	7	346
18	싸이솨분 특별 지구	0	3	169
		121	604	24,026

비고:

소기업: 근로자 10인 미만

중기업: 근로자 10~99인

대기업: 근로자 100인 이상

출처: 산업부

표 2: 근로자 수: 2004년 5월에 발표된 2002년 기준 고용형태 별, 성별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단위: 명)

	고용 형태	남성	%	여성	%	합계
1.	정규직	30,505	65.5	21,198	63.8	51,703
2.	계약직	14,581	31.4	11,270	33.9	25,851
3.	무급직	1,411	3.0	740	2.2	2,151
합계:		46,497	100	33,208	100	79,705

출처: 기업 조사 2002

표 3: 산업 분야 및 기업 규모 별 근로자 수(단위: 명)

산업 분야	기업 규모							
	<9		10~99		100+		합계	
	합계	%	합계	%	합계	%	합계	%
채석	68	4.4	622	40.1	860	55.5	1,550	100
제조	785	1.9	7,842	19.0	32,624	79.1	41,251	100
전기, 상수도	16	0.3	781	15.0	4,413	84.7	5,210	100
건설	482	3.8	7,938	62.7	4,242	33.5	12,662	100
도매, 소매, 자동차 정비	860	19.3	2,461	55.2	1,141	25.6	4,462	100
호텔, 레스토랑	495	9.2	2,006	37.2	2,894	53.6	5,395	100
교통, 통신	173	3.2	1,506	27.9	3,727	68.9	5,406	100
기타	166	6.3	917	35.0	1,539	58.7	2,622	100
교육, 의료	110	9.6	766	66.8	271	23.6	1,147	100
합계	3,155	4.0	24,839	31.2	51,711	64.9	79,705	100

출처: 기업 조사 2002

표 4: 주요 수입품:

품목	단위	2002	2003
전기	100만kwh	201	217
트럭	대	6,525	22,728
승용차	대	802	4,036
특수 차량	대	135	1,118
버스	대	527	1,515
트랙터	대	8,391	11,084
모터사이클	대	15,133	35,193
자전거	대	29,879	32,568
연료	1,000톤	264	236
시멘트	1,000톤	175	87
철	1,000톤	25	29
종이	톤	7,304	3,654
면사	톤	253	106
섬유	톤	858	275
제약	1,000US\$	2,313	2,077
설탕	톤	16,837	8,737
재봉틀	대	2,443	1,688
쌀	톤	7,399	16,010

출처: 재무부 관세국, 산업부

비고: 전기 항목은 2003년 1차 보고서, 나머지 항목은 2003년 전반기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표 5: 주요 수출품

품목	단위	2002	2003
전기	100만kwh	2,798	2,316
원목	1,000m ³	17	19
목재	1,000m ³	298	76
합판	1,000장	693	945
커피	톤	18,966	11,055
석고	1,000톤	110	77
주석	톤	603	322

출처: 재무부 관세국, 산업부

비고: 전기 항목은 2003년 1차 보고서, 나머지 항목은 2003년 전반기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8.2 지난 5년간 연평균 산업재해 사망자 수

이와 관련된 통계는 아직 수집된 바 없다. 사회보장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에 보고된 사망 사고는 단 3건에 불과하다. 노동관리과 기록에 따르면 2001~4년 동안 3개 주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루앙프라방 2건, 씨양쿠양 4건, 참파삭 2건). 체계적인 신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고 신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용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8.3 신고 된 업무상 사고 건수

사회보장기구에 따르면 2001~2004년 기간 동안 비엔티안 도에서 48건의 업무상 사고가 신고되었다(2001년 1건, 2002년 14건, 2003년 17건, 2004년 16건). 노동관리과 기록에 따르면 4개 주에 걸쳐 15건의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다.

8.4 산업재해 보상금이 지급된 업무상 사고 건수

사회보장기구는 사회보장기구에 가입되어 있고 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엔티안에서 48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8.5 보상 대상 사고 및 상해 목록

사회보장기구에 신고 된 사고는 사고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사고로 기록된다. 모든 10인 이상 사업체가 사회보장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통계가 실태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9. 국가 산업안전보건 캠페인

2003년, 사회보장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 된 사회보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가 열렸다(4월 28일). 캠페인 표어가 신문에 실렸으며, 비엔티엔 시내에 캠페인 현수막이 걸렸다. 25명의 관련 기업 및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워크숍도 개최되었다.

10. 기업의 자발적 산업안전보건 정책

Lao Brewery, Trimax Garment 공장, Trio Export (라오스)와 같은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인 자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주로 해외 투자를 받고 있거나 외국인이 경영하는 대기업들이며, 외국인 경영자들이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11. 국제 협력 활동

11.1 국제기구와의 산업안전보건 협력 활동

- 노동사회보장부는 중소기업 및 건설 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훈련 워크숍 개설 과정에서 ILO의 지원을 받았다.
- ILO 사회보장 프로젝트는 교관 훈련, 후속 훈련 등과 같이 라오스 노조연맹, 사회보장기구,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단위 산업안전보건 훈련 워크숍도 지원하고 있다.
- 현재 라오스 노조연맹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외보건,교육,개발지원기구(APHEDA)의 지원을 받아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모니터링 및 평가 기법에 관한 심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11.2 양자 프로젝트/협약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 해외 협력 활동

이 분야의 협력 활동은 독일기술청(GTZ)에서 지원한 산업안전보건 훈련 한 건 뿐이었다. GTZ의 지원을 받은 첨단기술직업교육국은 직업 훈련 교사의 교습 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 과정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과정은 4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이 5번째 모듈로 추가되었다.

산업부는 덴마크의 프로젝트 “청정 생산”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제가 포함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년 전에는 국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주 단위에서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훈련의 계획 및 운영은 국제기구에서 주도하고 있고 산업부는 지원 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할 수 없었다.

12. 산업 부문 별 특별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12.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활동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XCAP)는 ILO 방콕 사무소, 라오스상공회의소나 상공부와 같은 라오스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라오스에 WISE(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00년 6월 열린 WISE 인식 제고 교육에는 의류 및 수공업 분야의 민간 기업 대표자 40명이 참여한 바 있다. 2000년 8월 열린 WISE 훈련 교관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 시행되었으며, 후속 교육도 진행되었다. 이후 훈련을 받은 교관들이 상공회의소 디자인 센터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WISE 프로그램을 조직했다. 또한 “생산적이고 일하기 좋은 일터” 매뉴얼을 라오스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11명으로 구성된 훈련팀(라오스 노조연맹, 사회보장기구 소속)이 기업체 단위 산업안전보건 훈련 워크숍을 개최했다(11.1절 참고).

12.2 건설 부문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활동

건설업에 적용되는 WISE 방식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도 함께 도입되었다. 노동사회보장부 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규모 건축 현장 근로 환경 개선(WISCON)에 관한 워크숍도 개최되고 있다.

* 2003년, 건설 분야 근로 환경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 근로자 근로 환경 조사가 시행된 바 있다.

12.3 농업 부문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활동

* 농업은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부문이다. 라오스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은 국가 빈곤 퇴치 전략 및 프로그램에서 최우선 순위에 있는 산업 부문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농업 분야의 근로 환경이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불행히도 라오스에는 아직 농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활동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산업안전보건 캠페인과 라디오 광고를 통해 화학물질 남용의 위험성이 홍보되고 있다. 이 라디오 광고는 화학물질 사용 시 장갑, 마스크 등과 같은 개인보호장비 사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농림부 관계자들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 발생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발생 건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간 일부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가끔 있었지만, 사고 사례가 체계적으로 기록되거나, 사례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다. 농업 근로자에 대한 기술 지원/자문에는 안전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농림부에서도 화학물질 수입을 줄이기 위해 소량의 살충제만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12.4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특별 프로그램

- * 사회보장기구는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 * 라오스 노조연맹의 노동보호과는 국가 위원회와 협력하여 HIV/AIDS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13. 산업안전보건 조사 활동

* 예를 들어 2003년,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건설 근로자들은 교육 수준이 매우 낮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해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14. 국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개선 및 홍보를 위한 향후 과제 및 근로자 지원 활동

- 국가 사회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관한 정책 백서 발간을 강력히 권고한다.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관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홍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진 국가 산업안전보건 위원회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감독 업무 시행 책임을 지고, 소음, 조명, 분진 등에 대한 측정 기준 등을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
-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절할 기구가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모든 활동을 기록하고 문서화하여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업무상 사고 및 상해 신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감독 체계와 훈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훈련을 시행할 법적 책임을 진 단일 기관을 지정되어야 한다.
- 보건부의 위생법에 소음, 오염 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야 한다. 법적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전파되어야 한다.
- 대중 매체를 활용한 안전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
-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고객 만족이다. 구매자들의 선택이 생산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제품 품질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홍보를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 통신교통우편건설부가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보다 많이 관여해야 한다. 부처 관계자들과의 논의 결과, 통신교통우편건설부는 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의 원인, 예방 대책, 안전 홍보 캠페인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여러 산업 분야 중 건설업이 가장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교통우편건설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 산업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 훈련이 필요하다.